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자동차제조사 등 산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일부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, 중형자동차의 제원의 허용차 기준을 현실화 하고,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,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성능기준을 일원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최대안전경사각도 적용 제외 차종을 교량점검, 이삿짐운반, 소방 등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·장치를 갖춘 특수자동차까지 대상 확대(안 제8조)
- 나.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,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(안 제88조의3, 제89조의2, 별표 6, 별표 6의29)
- 다.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조건을 방향지시등의 동시 점멸 방식뿐 아니라 순차적 점등 방식도 가능하도록 점등조건 확대(안 별표 6의19)

라. 차량 중량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를 중형차와 대형차에 대해 동일하게 ± 100 킬로그램 또는 ± 3 퍼센트 가운데 큰 값을 적용(안 별표33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자동차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
(우편번호 30103)

- 전자우편 : herdong1928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5584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(전화 044-201-3850, 3853, 팩스 044-201-5584)로 문의하여 주시기거나,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령정보>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